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6617

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 전에는 「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」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 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배출부과금) ① ~ ⑧ (생	제41조(배출부과금) ① ~ ⑧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⑨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으
	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
	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
	<u>다.</u>